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제1582호 2009. 10. 19.

조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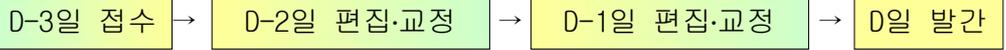
제85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제85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859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860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5
제86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84
제86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863호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864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4
제865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86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23
제86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	143
제86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50

공 고

제2009-820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154
제2009-821호	구의회 부의 안건 공고	156
제2009-822호	구의회 부의 안건 공고	158
제2009-823호	구의회 부의 안건 공고	159
제2009-824호	구의회 부의 안건 공고	161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 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 기능(안 제3조)

-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심의
-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심의대상(안 제4조)

- 1)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건당 4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
-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은 심의대상 제외

다. 심의요청(안 제11조)

- 1) 용역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요청.

서울특별시중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시험·평가·자문·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구정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과 기술용역 및 정보통신 등을 제외한 제반 용역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담당관·과(보건소 포함)로 용역결과 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심의
2.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4.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사업의 심의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4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4. 국·시비 보조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
2. 중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홍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 의요청서에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홍보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 개발 및 사업 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결과 보고)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정리하여 보고하고,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통보 받은 회의 결과의 내용을 이행하고, 이행 결과를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용역과제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위임사무 중 「약사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검진기관 지정 및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항 번호 띄어쓰기 및 항 번호 삭제(안 제2조, 제4조, 제5조)

나. 위임사무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안 별표)

1) 약국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9호)

- 「약사법」 중 제16조→제20조, 제20조→제22조, 제33조→제41조, 제64조→제69조, 제64조의2→제70조, 제65조→제71조, 제67조→제74조, 제68조→제75조, 제69조→제76조, 제69조의2→제77조, 제71조의2→제80조, 제71조의3→제81조, 제79조→제98조, 제70조→제78조로 각각 개정

2)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10호)

- 가호부터 자호까지 “동법”을 “「의료기기법」”으로 하고, 차호의 「의료법」 제30조제3항”을 “「의료기기법」 제47조”로 개정

3)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11호)

- 「의료법」 중 제30조제3항→제33조제3항, 제30조제6항→제33조제5항, 제33조→제40조, 제49조→제61조, 제50조→제63조, 제51조→제64조, 제63조의2→제84조, 제53조의2→제67조, 제72조→제93조로 각각 개정

4)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안 별표 제12호)

- 「의료법」 중 제31조제1항→제35조로 개정

5) 안마·접골·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안 별표 제13호)

- 「의료법」 중 제60조➡제81조, 제61조➡제82조로 각각 개정
- 6)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14호)
 - 가호의 “「의료기사법」”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나호부터 사호까지의 “동법”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각각 개정
- 7) 치과기공시설의 인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안 별표 제15호)
 - “「의료기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로 개정
- 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안 별표 제16호)
 - 「의료법」 중 제32조의2➡제37조로 개정
- 9)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별표 제19호)
 - 「주민등록법」 중 제17조의8➡제24조, 제18조의2➡제30조로 각각 개정
- 10)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0호)
- 11)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 신설(안 별표 제21호)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의 기준) 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 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간의 권한 중</p>
<p>제2조(위임의 기준) 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기관의 수입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입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위임의 기준) ① 구청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기관의 수입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입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p>	<p>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지휘감독.....</p>
<p>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①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p>	<p>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p>
<p>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p>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별표]

위 임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삭제>	<삭제>
2.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삭제>	<삭제>
3. <삭제 1999.08.16>	○ <삭제 1999.08.16>	<삭제>	<삭제>
4.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위임	구의회
가. 구의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6조		사무국장
· 의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 휴직에 따른 복직	제64조·제65조·제27조·제28조·		
나. 보건소 소속 7급 이하 지방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보건소장
다. <삭제 2006.09.28>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6조		
4의2 구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	○ <삭제 2006.09.28>	<삭제>	<삭제>
·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 「지방자치법」 제91조	위임	구의회
<신설 2006.09.28>			사무국장
5.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삭제>	<삭제>
6.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삭제>	<삭제>
7.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삭제>	<삭제>
8. <삭제 2000.01.10>	○ <삭제 2000.01.10>	<삭제>	<삭제>
9.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위임	보건소장
가. 약국개설 및 변경사항등록	○ 「약사법」 제20조		
나. 약국 폐업·휴업 및 재개신고	○ 「약사법」 제22조		
다.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라. 약국 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폐지신고	○ 「약사법」 제41조,		
마. 보고와 검사 등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		
바. 업무 개시 명령 등	○ 「약사법」 제69조		
사. 폐기명령 등	○ 「약사법」 제70조		
아. 개수명령	○ 「약사법」 제71조		
자.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약사법」 제74조		
차.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 「약사법」 제75조		
이에 따른 청문	○ 「약사법」 제76조, 제77조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다. 보고와 검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라. 개설등록의 취소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바. 시정명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 청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15. 치과기공시설의 인정·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5조	위임	보건소장
1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37조	위임	보건소장
17. <삭제 2001.05.15> 가.<삭제 2001.05.15> 나.<삭제 2001.05.15> 다.<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 <삭제 2001.05.15>	<삭제>	<삭제>
18. 마약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 감시원 배치 나. 마약류 명예지도원 위촉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임	보건소장
19.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 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나.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위임	동장
20. 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이에 따른 청문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	위임	보건소장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p>21. 「정신보건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과 이에 따른 청문</p> <p>나.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p> <p>다. 사회복귀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p> <p>라. 사회복귀시설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p>	<p>○ 「정신보건법」 제12조제3항, 제4항 및 제12조의3, 제20조</p> <p>○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p> <p>○ 「정신보건법」 제17조</p> <p>○ 「정신보건법」 제18조제1항</p>	<p>위임</p>	<p>보건소장</p>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변경함.
(안 제16조, 장제목 제4장, 제5장 등)

- 1)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 2) 잡종재산 ⇒ 일반재산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담부서 추가(안 제10조제2항)

- 1)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 및 특별회계 전담부서

다. 조항 신설(안 제29조제3항)

-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함.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함. (안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

- 1) 감액율 : 100분의 50 ⇒ 100분의 70

마. 조항 삭제 (안 제26조, 제35조제4항 및 제6항, 제41조)

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확대(안 제90조)

- 1) 제1항 보상금 상한액 1,000만원 ⇒ 3,000만원 상향
- 2) 제1항제1호 필지별 한도액 200만원 ⇒ 600만원 상향
- 3) 제1항제2호 그 밖의 재산 한도액 100만원 ⇒ 300만원 상향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 제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 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구청의 담당관·과장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심의회 운영·기능 및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구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구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

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4장(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행정재산

제16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9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제1절(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제2절(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절(제3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써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써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구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구유재산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구유재산
5. 중랑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구유재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유재산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임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중량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중량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중량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중량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7. 중량구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⑤ 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해당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를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와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중량구가 건립한 아파트형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 사.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공장 내의 공유재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 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써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중량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울특별시중량구금고은행(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중량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중량구 수입으로 한다.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른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절 매각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울특별시중랑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중랑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에 따라 매각할 때

2.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④을 삭제한다.

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을 삭제한다.

제36조(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

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중량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써 토지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에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써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중량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중량구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중량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구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제3절 신탁

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7장(제42조부터 제4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청사관리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동·구의회·보건소 등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2. 도괴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써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6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8장(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부터 제56조부터 제58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관사관리

제47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 부구청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제49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제59조부터 제6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물품통칙

제59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0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1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62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주관부서장은 물품을 매입·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63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장이 제62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영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62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64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제65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서울특별시중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주관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제68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장 출납

제68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70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중앙구휼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1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0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동일규격단위의 총량
-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행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72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해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1장(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장 보관

제73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75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6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76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는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장(제78조,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장 장부

제7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제79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의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81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81조에 따라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83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1조 및 제8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되, 1부는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85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4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6조(인계의 절차)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인계를 할 경우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장은 해당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장(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장 보칙

제8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8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구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2조(구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p>
<p>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u>규정에 의</u> <u>하여</u>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구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p>	<p>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u>에 따라</u>----- ----- ----- -----</p>
<p>제6조(실태조사) ①<u>재산관리관은</u> 법 제44조제2항의 <u>규정에 의거</u> 구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유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p>	<p>제6조(실태조사) ① <u>재산관리관은</u> -----<u>에</u> <u>따라</u> ----- ----- -----</p>
<p>②<u>제1항의</u> <u>규정에 의하여</u>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u>각 호</u>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 다.</p>	<p>② <u>제1항에 따라</u> ----- -----<u>각 호의</u>----- -----</p>
<p>1. ~ 3. (생략)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u>있는지의 여부</u> 5. ~ 6. (생략) 7. <u>기타</u> 필요한 사항</p>	<p>1. ~ 3.(현행과 같음) 4. -----<u>있는지 여부</u> 5. ~ 6. (현행과 같음) 7.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p>
<p>③<u>재산관리관은</u> 구유재산 <u>실태조사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구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 는 특별히 유의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야 한다.</p>	<p>③ <u>재산관리관은</u> ---<u>실태조사 시</u>----- ----- -----<u>하며,</u>----- -----</p>
<p>1. ~ 3. (생략) 4. <u>타인의</u>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생략)</p>	<p>1.~3.(현행과 같음) 4. <u>다른 사람의</u> ----- 5. (현행과 같음)</p>
<p>④<u>제1항의</u>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 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구 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p>	<p>④ <u>제1항의</u> 실태조사결과 ----- ----- -----</p>
<p>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u>재산으로서</u>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p>	<p>제7조(재산의 집단화) -----<u>재산으로써</u> --- ----- ----- -----</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②<u>구유재산</u>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 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 -----.</p> <p>② <u>구유재산</u> ----- -----, 해당----- -----</p>
<p>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u>구청장은</u>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p>	<p>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구청장은</u>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 ----- ----- 있을 시는----- -----</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단서 신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 .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른 법령에 따라 ----- -----.</p> <p>② 제1항에 따라 ----- -----.</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p>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u>행정재산으로</u>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u>기부채납을</u>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u>기유재산인</u>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에서</u>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p> <p>제15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u>제17조의</u>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u>행정재산으로</u> -----</p> <p>-----</p> <p>-----</p> <p>② <u>기부채납을</u> -----</p> <p>-----</p> <p>-----</p> <p>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u>기유재산인</u> -----</p> <p>-----</p> <p>-----</p> <p>-----</p> <p>-----</p> <p>② <u>제1항에서</u> -----</p> <p><u>-같은-</u>-----</p> <p>제15조(무상사용기간) -----</p> <p>----- <u>제17조에</u> 따르며, -----</p> <p>-----</p> <p>-----</p>
<p>제4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p>	<p>제4장 행정재산</p>
<p>제16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u>행정재산·보존재산의</u>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보존재산을</u>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u>행정·보존재산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1. <u>용도 폐지하여</u>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u>재산의</u>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16조(관리) ----- <u>행정재산의</u> -----</p> <p>-----</p> <p>-----</p> <p>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을</u> -----</p> <p>-----</p> <p>-----</p> <p>② <u>행정재산이</u> -----</p> <p>----- <u>아니 된다.</u></p> <p>1. <u>용도폐지하여</u>-----</p> <p>2. <u>재산의</u>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사용·수익허가) <u>행정·보존재산을</u> 사용·수익 허</p>	<p>제18조(사용·수익허가) <u>행정재산을</u> -----</p>

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19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

제21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 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7.(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
-- 행정재산의 -----

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에 따라 행정재산을 -----

제21조에 따라 -----

② 재산관리관은 ----- 행정재산을 -----

-----행정재산에 -----
-----에 따라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

④ 법 -----에 따라 -----

⑤ 일반경쟁입찰에 -----
----- 따라 -----
----- 해당 행정재산의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
연수가-----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그 밖의 -----
-----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대부료의 효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의 효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제25조(대부료의 효율) ① 영 --에 따른 연간 -- ----- ----- <u>해당</u> ----- ----- -----</p>
<p>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p> <p>1. ~ 2. (생략)</p> <p>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p>	<p>② 다음 ----- <u>해당</u> ----- 1.~ 2.(현행과 같음) 3. ----- <u>써</u> ----- -----</p>
<p>③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p> <p>1. ~ 2. (생략)</p> <p>3. <u>중량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제외)이</u>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u>당해</u>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u>해당</u>----- ----- 1. ~ 2.(현행과 같음) 3. <u>중량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u> <u>해당</u>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u>해당</u>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효율은 <u>당해</u>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p> <p>1. ~ 2. (생략)</p> <p>3.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외국인투자 기업 등이</u>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u>구유</u>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p> <p>4.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u>구유</u> 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중량구가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u>구유</u> 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p>	<p>④ 다음 각 호의 ----- <u>해당</u> ----- 1. ~ 2. (현행과 같음) 3. 「<u>외국인투자 촉진법</u>」 제13조제4항에 따라 <u>외국인투자기업 등이</u> ----- ----- ----- ----- <u>에 따라</u> ----- ----- ----- ----- -----</p>

현행	개정안
<p>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 관련 법령에 의거 중량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p> <p>6. 중량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u>사용토록</u> 하는 경우</p> <p>7. 중량구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p> <p>⑤ 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p>	<p>5. ----- ----- -----에 따라 ----- -----</p> <p>6. ----- -----사용 하도록-----</p> <p>7. (현행과 같음)</p> <p>⑤ 구유임야를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p>
<p>제26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구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로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p>	<p><삭제></p>
<p>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로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서 "당해 원석의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가조서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 ----- ----- 해당 ----- 세제곱미터당 ----- ----- 이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서 "해당 ----- 해당 -----</p> <p>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를 ----- -----씩-----</p> <p>④ 제3항의 ----- ----- 그 밖의 -----</p> <p>⑤ 제1항에 불구하고 ----- ----- -----</p>

현행	개정안
<p>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p> <p>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물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p>1. ~ 5. (생략)</p> <p>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p> <p>{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p> <p>⑤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⑥중량구가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 ----- -----</p> <p>② 제1항의 ----- ----- -----에 따른 ----- -----</p> <p>③ 건물의 ----- 해당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④ ----- -----자와 ----- ----- 30퍼센트를 ----- -----자와 ----- -----자와 ----- -----면적 ÷ 공용으로 ----- -----</p> <p>⑤ 대부건물의 -----에 따른 ----- ----- -----</p> <p>⑥ 중량구가 -----아파트형공장을----- ----- -----해당 -----</p>

현행	개정안
<p>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p>	<p>⑦ -----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 따라-----</p>
<p>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에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p>
<p>1. (생략) 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 다. (생략)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1. (현행과 같음) 가. 「조세특례제한법」 -----항에 따른 ----- 나. ~ 다.(현행과 같음) 라. ----- -씨-----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 지역 내로-----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p>
<p>2. (생략)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1천만 달러이상 2천만 달러미만인 사업 나. (생략)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2. (현행과 같음) 가. ----- 미화 1천만----- 나.(현행과 같음) 다. ----- -씨-----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 다른 ----- 지역 내로 -----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p>

현 행	개 정 안
<p>3. 9생략) 가. ~ 나. (생략)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 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u>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u>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u>지역내로</u> 이전하는 사업 바.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u>아파트형 공장 내의</u> 공유재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u>전액감면</u>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공공성과 수익성을</u>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u>경영수익사업으로</u>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p>3.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라. <u>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u> ----- ----- 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 <u>쓰</u> -- <u>다른</u> ----- <u>지역 내로</u> ----- 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에</u> ----- <u>쓰</u>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u>아파트형공장 내의</u>-----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라----- ----- ----- ----- 따른다. 1. <u>전액 감면</u> ----- 2. ~ 3. (현행과 같음) ③ 「채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p> <p>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 ----- 1. <u>공공성과</u> ----- ----- <u>쓰</u> ----- 2. <u>경영수익사업으로</u> ----- (건물·그 밖에 ----- ----- <u>쓰</u> ----- -----</p>

현 행	개 정 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중량구에 유리한 때</p> <p>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p> <p>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p>	<p>② 제1항에 따른 ----- ----- -----</p> <p>1. 재산의 ----- -----</p> <p>2. 인근의 ----- -----</p> <p>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 -----</p>
<p>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 중량구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량구금고은행(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 ----- 제31조에 따른 ----- -----</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중량구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중량구 수입으로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 -----에 따른 세입·세출의 ----- ----- -----</p>
<p>⑤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⑤ 대부기간이 ----- -----</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 ----- -----</p>
<p>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p> <p>2.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p>	<p>1. 중도해지로 ----- -----</p> <p>2. -----에 따른 ----- ----- -----</p>
<p>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31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 ----- 증가한 경우, ----- ----- 100분의 70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삭제>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삭제>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삭제>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의 납기) ① 구유재산 ----- ----- 이하인 ----- -----, 1년 초과인 -----
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1. ----- : 3개월 ----- 2. ----- : 6개월 ----- 3. ----- : 9개월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 그 밖의 -----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
1. ~ 9.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일반재산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1. ----- 해당 -----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2. ----- 해당 -----

현 행	개 정 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u>규정에 의한</u>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3.----- <u>에 따른</u> -----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u>규정에 의한</u>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u>규정에 의한</u>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u>규정에 의한</u>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u>당해</u>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 ----- <u>에 따른</u> ----- ----- <u>에 따른</u> ----- ----- <u>에 따른</u>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 ----- <u>해당</u> ----- -----
5. 「장애인복지법」에 <u>의한</u>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로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u>할수</u>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 <u>따른</u> ----- ----- -----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u>일반재산의</u> ----- ----- ----- <u>할 수</u> ----- -----
1.제37조제1호 또는 제4호의 <u>규정에 의하여</u> 매각할 때 2. (생략)	1. 제37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 2. (현행과 같음)
③영 제39조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u>일반재산의</u> ----- ----- -----
1.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의 <u>규정에 의하여</u> 매각할 때	1. 영 제38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12호에 따라 ----- -----
2.구청장의 필요에 <u>의하여</u>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u>계약시에</u> 따로 정하는 경우와 <u>계약시에</u>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2. 구청장의 ----- <u>따라</u> ----- ----- ----- <u>계약 시에</u> ----- ----- <u>계약 시에</u> 재산 명도일을 -----
3.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3. <u>그 밖에</u> ----- ----- -----
4. 「사회복지사업법」에 <u>의하여</u>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u>당해</u>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 <u>해당</u> ----- -----

현 행	개 정 안
<p>④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영 제42조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 또는 재개발사업인가당시의 건물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 보존지역에 있어 동일 재개발구역안의 다른 구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p> <p>3.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 토지를 매매계약체결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p> <p>제36조(조성원가매각)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삭제></p> <p>⑤ -----에 따라 ----- 일반재산이 -----</p> <p><삭제></p> <p>제36조(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내의 재산</p> <p>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p> <p>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 지역내의 재산</p> <p>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p> <p>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중량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p>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중량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같은 법-----에 따라 ----- ----- 국가산업단지 내의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형공장 내의 ----- 3. 구청장이 ----- -----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 4. 구청장이 ----- 용지 내의 -----</p> <p>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에 따라----- ----- ----- 1. -----월 24일----- -----(------같은 -----, -----같은 -----) ----- 2. ----- ----- 3.----- ----- 4. -----, 그 밖에 지역에서는 ----- ----- -----면적범위 내의 ----- ----- ----- ----- ----- 매각범위 내에서 ----- -----</p>

현 행	개 정 안
<p>5.중량구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중량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p>	<p>5. 중량구 ----- ----- ----- 50퍼센트 -----</p>
<p>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공유지를 당해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p>	<p>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해당 계획에 ----- -----</p>
<p>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써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p>	<p>7. <u>좁고</u>-----<u>쓰</u> -----</p>
<p>제38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8조(신탁의 종류) -----에 따라 일반재산을 ----- ----- -----</p>
<p>제41조(분수립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립의 설정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분수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p>	<p><삭제></p>
<p>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은 구·동·구의회·보건소 등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 ----- ----- 따라 ----- ----- 수립·시행 ----- -----</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 ----- 각 호와 -----</p>
<p>가. 재해 나. 도피위험 다. 신설기관 라. 임차 마. 노후 바. 협소 사. 위치 부적당</p>	<p>1. -- 2. ---- 3. ---- 4. -- 5. -- 6. -- 7. -----</p>
<p>제43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43조(청사의 부지) ----- ----- ----- 「건축법」 상의 -----</p>

현 행	개 정 안
<p>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u>다음사항을</u>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p>제50조(사용책임) ----- ----- <u>다음 사항을</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p>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p>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가 ----- 2. 사용자가 ----- 3. 사용자가 -----에 따른 ----- 4. 그 밖에-----
<p>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p>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 ----- 에어컨 ----- 2. 건물유지 ----- 3. 보일러 ---- 4. 응접셋트, 커튼 -----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아파트 -----
<p>제54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p>제54조(사용료의 면제) -----에 따른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대상 ----- 2. 관사를 ----- 3. 시설의 -----

현행	개정안
<p>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p>	<p>제55조(비품의 관리) -----에 따른 ----- -----에 따라 ----- -----</p>
<p>제56조(인계 인수 등) ①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u>운영비</u>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p> <p>1. <u>관사의</u>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u>관사운영비</u>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p>	<p>제56조(인계 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 -----</p> <p>② 제1항에 따라 ----- ----- <u>운영비</u> 중 ----- -----</p> <p>1. <u>관사의</u> ----- 2. <u>관사운영비</u> ----- 3. 그 밖에 -----</p>
<p>제57조(변상조치) 관사의 <u>사용도중</u>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p>	<p>제57조(변상조치) -----<u>사용도 중</u>----- ----- -----</p>
<p>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8조(준용) ----- 제47조부터 제57조까지의 -----</p>
<p>제59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p>	<p>제59조(물품의 분류) ----- ----- 따른다.</p>
<p>제60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p>	<p>제60조(물품의 정리구분) ----- ----- 따른다.</p>
<p>제61조(연도구분) 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종료한다.</p> <p>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p>	<p>제61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 -----일까지로 한다.</p> <p>② <u>물품출납의</u> ----- ----- 따른다.</p>

현 행	개 정 안
제10장 출납	제10장 출납
<p>제68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략)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p>제68조(물품의 가격) -----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 <u>따른</u> ----- 6. --- <u>부터 제5호까지에</u> ----- 7. --- <u>부터 제5호까지의</u> -----
<p>제70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 6. (생략)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략)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생략) 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p>	<p>제70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 <u>각 호의</u> ----- ----- <u>그 밖의</u> ----- ----- <u>따라</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써</u> ----- 2. ~ 6. (현행과 같음) 7. ----- <u>써</u> ----- 8. --- <u>부터 제7호까지에</u> ----- <p>② 제1항에 따른 ----- ----- <u>각 호의</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3. ----- <u>써</u>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의</u> ----- <p>③ 제2항에 따른 ----- ----- <u>써</u> -----</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p>	<p>② ---에 따라 폐기(해체)처분을 ----- -----</p> <p>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p>
<p>제11장 보 관</p> <p>제73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p> <p>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p> <p>제75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주관부서장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p> <p>제76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주관부서장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76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p>제11장 보관</p> <p>제73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 -----</p> <p>② 공용품 ----- -----</p> <p>제75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 ----- ----- 그 밖의 ----- -----</p> <p>② 제1항에 따라 ----- ----- ---</p> <p>제76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주관부서장 ---- ----- ----- -----</p> <p>② 물품출납공무원은 ----- ----- ----</p> <p>③ 물품출납공무원은 ----- ----- -----</p> <p>④ 물품관리관은 ----- ----- -----</p> <p>제77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 ----- 다음 각 호에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행과 같음) 2. ----- ----- -----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②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는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p>	<p>② 제1항의 ----- -----항에 ----- -----</p>
<p>제12장 장 부</p>	<p>제12장 장부</p>
<p>제7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p>제7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 따라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p>	<p>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 -----에 따른 ----- -----</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 -----</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같음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 ----- -----</p>
<p>제79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p>	<p>제79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 ----- -----</p>
<p>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의 장부작성에 같음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 ----<u>같음한다.</u></p>
<p>제81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p>	<p>제81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 -----</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 ----- -----</p>

현 행	개 정 안
<p>제82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p> <p>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한다.</p> <p>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p>	<p>제82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81조에 따라 -----</p> <p>-----</p> <p>-----</p> <p>-----</p> <p>② 물품의 ----- 그 밖의 -----</p> <p>----- 따라 -----</p> <p>③ 시설공사에 -----</p> <p>-----</p> <p>-----</p>
<p>제83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1조 및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되 1부는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p>	<p>제83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p> <p>-----에 따라 -----</p> <p>----- 따라 ----- 해당 -----</p> <p>-----</p> <p>-----</p> <p>② 제1항의 ----- 해당 -----</p> <p>-----</p> <p>-----</p> <p>③ 제1항 -----에 따른 -----</p> <p>-----</p> <p>-----</p>
<p>제85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된 자로 하여금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85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p> <p>----- 그 밖의 -----</p> <p>-----</p> <p>-----에 따라 -----</p> <p>-----</p>
<p>제86조(인계의 절차)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하는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p>	<p>제86조(인계의 절차) -----에 따라 -----</p> <p>----- 할 경우에는 -----</p> <p>-----</p> <p>-----</p>
<p>제8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해체되는 조직의 주관부서장은 당해 조직의 변경·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제8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p> <p>----- 해당 -----</p> <p>-----</p> <p>-----</p> <p>-----</p> <p>-----</p>

현 행	개 정 안
제13장 보칙	제13장 보칙
<p>제88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제8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항에 따라 ----- 해당 -----</p>
<p>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p>
<p>③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p>	<p>③ 영 제81조에 따라 ----- 그 밖에 -----</p>
<p>제8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8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p>
<p>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p> <p>2. ~ 4. (생략)</p>	<p>1. ----- 6개월 -----</p> <p>2. ~ 4.(현행과 같음)</p>
<p>②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구유재산의 ----- 따라 -----</p>
<p>제9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9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에 따른 ----- 3,000만원을 -----</p>
<p>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p>	<p>1. --- 각 목의 ----- 600만원을 -----</p>
<p>가. (생략)</p> <p>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의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그 밖에 -----</p>
<p>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p>	<p>2. ----- 그 밖의 재산을 ----- 300만원을 -----</p>

현 행	개 정 안
<p>②보상금은 <u>은닉재산중</u> <u>구유재산</u>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u>있으며</u> <u>신고인이 2인 이상인</u>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u>안된다</u>.</p>	<p>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 -----<u>있으며</u>,-----<u>2명</u>----- -----</p> <p>③ 영 ----- ----- -----</p> <p>④ 은닉재산의 ----- ----- <u>아니 된다</u>.</p>
<p>제91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u>지체없이</u>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91조(합필의 신청) ----- ----- -----<u>지체 없이</u> 해당 ----- -----</p>
<p>제92조(구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u>의하여</u>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u>당해</u>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p> <p>이 경우 <u>당해</u>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p>	<p>제92조(구유토지의 분필) ----- -----<u>따라</u>----- -----<u>해당</u>----- ----- -----<u>해당</u>-----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p>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분쟁조정 범위

- 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 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 3)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4)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나. 위원회 구성 등(안 제3조)

-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중랑구청장이 위촉한다.

다. 조정의 신청(안 제11조)

- 1)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 조정절차(안 제13조)

- 1)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3)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4)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5)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마. 조정의 거부 및 중지(안 제14조)

- 1) 분쟁이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따라 조정 등을 받은 사항

바. 조정에 대한 불복(안 제17조)

- 1)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중랑구의회 의원 1명
3.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중량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중량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법 제12조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인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조정)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인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및 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조정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용의 부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써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2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법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원 인 제공자	법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분 쟁 내 용		
피 해 사 항		
조 정 요 청 사 항		
기 타 사 항		
<p>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중랑구청장 귀하</p>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육성·관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인정시장의 기준 등(안 제7조)

- 1) 도·소매업, 용역업의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안 제3장)

- 1)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인접하여 상권을 이루는 지역을 구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조직의 신청에 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등(안 제20조, 제22조)

- 1) 상인의 동의를 얻어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라. 예산의 지원(안 24조)

- 1) 상인회에서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25조)

- 1)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의 사업 목적 외 사용,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교부중지 및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함.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 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에 동의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발생적 시장은 예외로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제7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 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 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8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 구역은 제4조의 시장의 구역 기준을 따른다.

- ②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0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

- 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1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2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 진흥조합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장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시장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제16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그 밖에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9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 받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4.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가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

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 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면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상인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상인회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준공(완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상인회가 작성한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26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직책, 성명, 주소, 연락처 등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1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료 징수 등)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과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포함)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7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

제39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0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8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2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된 인정시장, 상점가, 상인회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수필통지서(3)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수입일 부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 귀하					
A80 ×60mm 신문용지 54kg/㎡			A80 ×60mm 신문용지 54kg/㎡			A80 ×60mm 신문용지 54kg/㎡			A80 ×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2호서식]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세입과목	(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위반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기 한	년 월 일	
납 입 장 소	시내각은행 본점, 지정 예금취급소, 농협, 수 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겠습니다.		수입일 부 인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은행 ○○지점		수입일 부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징수관(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 귀하		
A80 ×60mm 신문용지 54kg/㎡			A80 ×60mm 신문용지 54kg/㎡			A80 ×60mm 신문용지 54kg/㎡		

[별지 제3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관청	중량구청장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p>「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중량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와 관련입니다.

2.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단 체 명			주 소
과태료 처분	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		과 태 료 금 액
내 역	부과관청	중량구청장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 부과통지서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공동상표제정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 사용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상표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이미지를 보존하며,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 나. 중소기업 공동상표 전용사용권 취소기준 신설(안 제8조의2)
- 다.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법적보호 기준 신설(안 제8조의3)

서울특별시중량구 조례 제862호

서울특별시중량구중소기업공동상표제정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량구중소기업공동상표제정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량구중소기업공동상표제정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중량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14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1월 이내에 상표법에 의한”을 “1개월 이내에 「상표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협의회”를 “상공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하고, **제2항** 중 “중량구중소기업 협의회”를 “중량구상공회”로 하고, **제3항** 중 “중소기업협의회”를 “상공회”로 하고,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로 하고, **제2호** 중 “중소기업협의회”를 “상공회”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용사용권 취소)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규약을 위반하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제8조의3(중소기업 공동상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중소기업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로 하고, **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로 하고, “중량구중소기업협의회”를 “중량구상공회”로 하고,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중량구중소기업공동상표 제정및운용조례	서울특별시중량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u> 서울특별시중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개발과 개발된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 <u>142조에 따라</u> ----- ----- ----- -----
제3조(공동상표의 제작 등) ① ~ ③ (생략) ④공동상표는 개발 완료후 <u>1월 이내에 상표법에 의한</u> 상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동상표의 제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1개월 이내에 「상표법」에 따른</u> -----
제4조(공동상표개발 추진위원회) ① (생략) ② (생략) 1. 구 <u>중소기업협의회</u> 법인등록 추진(최초의 추진위원회에 한한다) 2. ~ 4. (생략)	제4조(공동상표개발 추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u>상공회</u> ----- -----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추진위원회는 <u>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량구 <u>중소기업협의회</u> 회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구 <u>중소기업협의회</u> 회원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u> ----- ----- ②----- <u>상공회</u> ----- ③----- <u>상공회</u> ----- <u>명</u> -----
제7조(공동상표의 사용자격)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u>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u> 에 해당하는 자로서 중량구에 주 사무소를 두거나 공장 시설을 가진자 2.중량구 <u>중소기업협의회</u> 회원 또는 중량구 중소기업 관련법인	제7조(공동상표의 사용자격)----- ----- 1. 「 <u>중소기업기본법</u> 」 제2조에 해당 ----- ----- 2. ----- <u>상공회</u> ----- -----

현 행	개 정 안
	<p><신설> 제8조의2(전용사용권 취소)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용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용규약을 위반하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p>
	<p><신설> 제8조의3(중소기업공동상표의 법적보호) 구청장은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중소기업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p>제10조(기능) 위원회는 구청장의 공동상표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p>	<p>제10조(기능) _____</p> <p>_____</p> <p>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p>
<p>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u>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u>생활복지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u>중랑구중소기업협의회</u> 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p>	<p>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u>-----</p> <p>②-----<u>재정경제국장</u>-----</p> <p>-----<u>상공회</u>-----</p> <p>_____</p> <p>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p>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인 협의·조정을 심의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며, 수당 지급기준을 다른 조례의 지급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 1)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로 개정

나.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 중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협의·조정을 심의로 변경

- 1) 제3조(기능) 중 “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를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개정

다. 물가대책위원회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

- 1) 제13조(수당)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개정

라.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중 “제3조 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p> <hr/> <hr/> <p>-----</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1. ~ 4. (생략)</p> <p>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주차요금</p> <p>2. 창고보관료</p> <p>3. 가정의례 요금</p> <p>4.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중랑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p> <hr/> <hr/> <p>-----</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삭제></p> <p>6.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여기간</u>으로 한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되어야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남은 기간</u>으로 한다.</p> <p>제7조(위원의 해촉) _____그밖의 -----</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p> <p>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p> <p>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p> <p>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실무위원 <u>10인</u>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u>유관기간·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u>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실무위원 <u>10명</u> 이내로 구성한다.</p> <p>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u>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u>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둔다.</p> <p>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p>	<p>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명</u>을 둔다.</p> <p>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p> <p>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p>
<p>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u>제3조 제2항</u>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u>제3조제2항</u>의 _____ _____ _____.</p>
<p>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u>제3조 제2항</u>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p> <p>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u>자료 및 의견</u>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u>제안 설명</u>을 하여야 한다.</p>	<p>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u>제3조제2항</u>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p> <p>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u>자료 및 의견</u>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u>제안 설명</u>을 하여야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 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1) 구청장은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나.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1)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표창 할 수 있음.

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1)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중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 효친 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의 달) 경로 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 실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여 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기존에 운영중인 청소년독서실의 주소변경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골자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별표 1]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다. [별표 2]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3항 중 “바에 의하여”를 “바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4. 「장애인복지법」에 <u>의하여</u>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p> <p>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u>의한</u>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p> <p>6.(생략)</p> <p>7. <u>기타</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4. <u>따라</u></p> <p>5. <u>따른</u></p> <p>6.(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에</u></p>
<p>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②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u>아니 된다</u>.</p> <p>③(생략)</p> <p>④(생략)</p> <p>⑤구청장은 <u>제4항의</u> 규정에 <u>의하여</u>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p> <p>.....</p> <p>.....<u>안 된다</u>.</p> <p>②.....</p> <p>.....<u>안 된다</u>.</p> <p>③(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⑤..... <u>제4항에 따라</u></p> <p>.....</p>
<p>제10조(지도·감독) ①(생략)</p> <p>②(생략)</p> <p>③<u>제2항의</u> 규정에 <u>의하여</u>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0조(지도·감독)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u>제2항에 따라</u></p> <p>.....</p>
<p>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구청장은 다음 <u>각호의</u>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p> <p>1.(생략)</p> <p>2.(생략)</p> <p>3.<u>기타</u>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p> <p>②구청장은 <u>제1항의</u> 규정에 <u>의하여</u>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p> <p>1.(현행과 같음)</p> <p>2.(현행과 같음)</p> <p>3.<u>그 밖에</u></p> <p>②..... <u>제1항에 따라</u></p> <p>.....</p>

[별표 1]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독서실명	소재지	비고
용마청소년공부방	면목3·8동 50-17	
신내청소년독서실	신내1동 492-16	
면목청소년독서실	면목5동 175-18	
망우청소년독서실	망우본동 461-8	

[별표 2]

서울특별시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구 분

-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 기 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자

이용료

구 분	일 일 권	정 액 권(월)
청소년	500원	10,000원
기 타	1,000원	20,000원

사물함 사용료(공통)

구 분	보 증 금	사 용 료(월)
사물함(1개 기준)	10,000원	3,000원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대하여 상위조례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문 번호를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주차장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안 제3조)
- 나.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안 제17조)
- 다. 여행주차장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안 제23조)
- 라.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안 [별표 1]제6호)
- 마.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으로써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안 [별표 1]제15호)
- 바. [별표 2]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추가
- 사. 조례 조문번호 - 일련번호로 변경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대상

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설치 자금융자 등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

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제4항에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8.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10.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제5조(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3만원 징수
(사전고지 후 해제)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주차권 판매 후 징수

요금을 정산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제8조(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9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는 제1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 서울특별시 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 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8조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노상주차장

제10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관리) ①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등 정부의 차량이용 억제시책에 따르는 차량에 대하여 전용주차권을 우선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순찰자를 말한다.

②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하되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경형자동차 외의 자동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외의 자동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30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하역주차구간)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 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5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 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의사항

제3장 노외주차장

제16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 제13조의 규정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2.4톤 미만의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18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중량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부설주차장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20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시 설치비용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설치의무 면제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행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표 2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용자 및 보조

제24조(용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로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제25조(용자의 방법) ① 용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용자금의 지급절차는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
통보하는 용자대상에게 용자하도록 하고, 용자금의 용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용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구청장은 용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급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용자금의 반환)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용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용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2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제28조(보조의 방법) ① 제26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보조한도, 보조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공사비의 반환) 주차장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

(단위 : 원 - 구획당)

구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 주차시 10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정기권		1회 주차시 10분당	월정기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1,000	5,000	-	-	800	250,000	100,000
2급지	500	4,000	-	-	500	180,000	60,000
3급지	300	3,000	-	-	300	100,000	40,000
4급지	200	2,000	50,000	-	200	환승목적 주차시 40,000 기 타 50,000	20,000
5급지	100	1,00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함.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 7조제1항 및 법 제 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4대문 주변지역 : 사직로·울곡로·왕산로·난계로·왕십리길·퇴계로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신촌지역 : 경의선철도·경의선 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대흥로·용산선철도·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3) 영등포지역 : 경인로·선유로·노들길 및 여의도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4) 영동지역 : 올림픽대로·도산대로·삼성로·봉은사로·영동대로·테헤란로·삼성로·도곡동길·효령로·반포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5) 잠실지역 : 올림픽대로·석촌호수길·삼학사길·잠실길·올림픽대로·송파대로·신천동길·오금로를 잇는 도로·올림픽로·위례성길 및 백제고분로를 연결한 내부 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6) 천호지역 : 선사로·구천면길·진황도길·둔촌로·성내동 안길 및 풍납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7) 청량리지역 : 제기로·전농로·배봉로·하정로 및 정릉천을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 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고 인근 주차장과 형평 유지 등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거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2.4톤 미만의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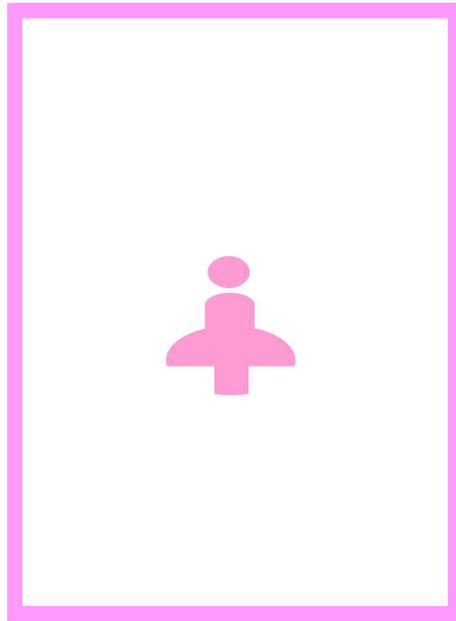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 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 목적으로 주차 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4.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5.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 차량으로써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1인 1회에 한하여 공영주차장(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하여 준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별표 2]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제23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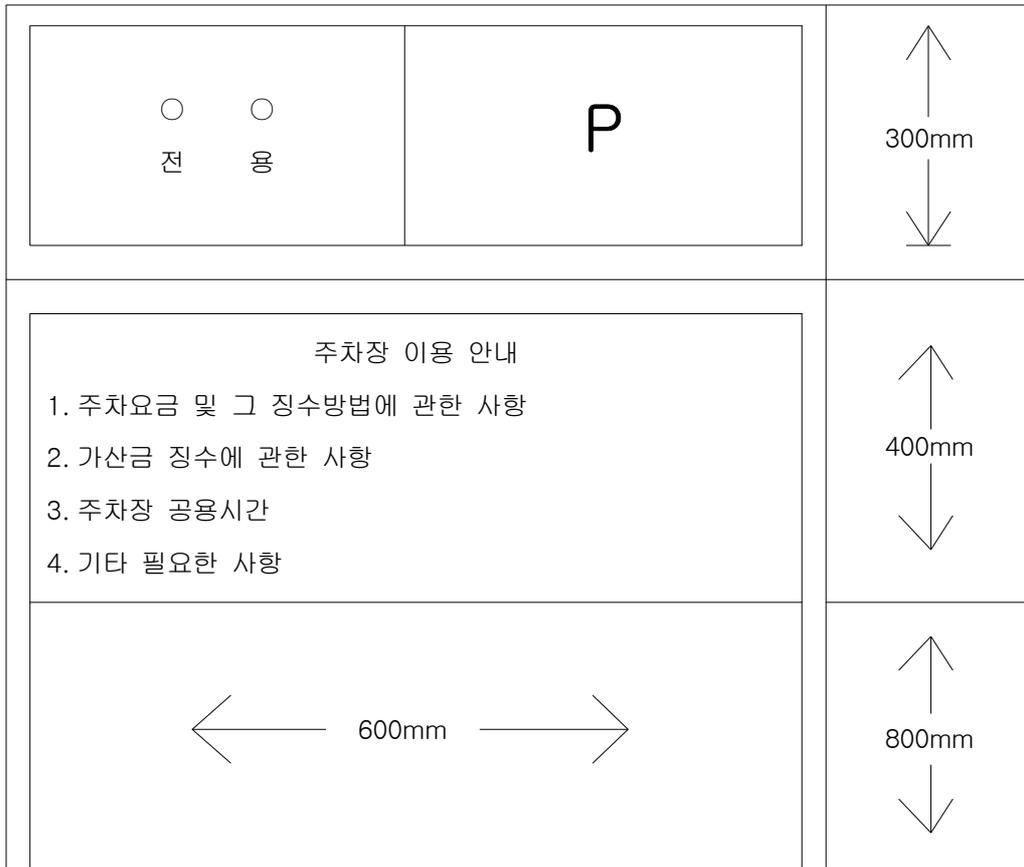
출입통로

- 비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3m 이상×세로 5m 이상)과 확장형(가로 2.5m 이상×세로 5.1m 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따르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cm×세로 155cm
2. 색채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용주차장표시판(제11조제3항 관련)



- 재 료 : 알루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고딕체
- 문 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 이상의 지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색,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1조제2항 관련)

(앞면)

	9cm
6cm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 건축물위치 : · 사 용 자 : · 사용 기간 : · 이용주차장 : 중 량 구 청 장 (인)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은 서울특별시 중량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1) 「식품위생법」 중 제71조→제89조, 제21조제2항→제36조제2항, 제32조제1항→제47조제1항, 제65조→제82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제7조→제21조, 제42조→제61조

나. 기금 재원 조성 확대(안 제3조)

1)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다. 기금 사업 추가(안 제4조)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운영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한 용자사업

3)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 보조

서울특별시중량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량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중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법 제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란 서울특별시 중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8. 그 밖에 법 시행령 제61조에 정하는 식품위생, 주민 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기획홍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중랑구의회 의원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

⑥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 담당주사가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비밀 준수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부정부패가 있는 등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

제16조(용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총액·용자한도·용자절차 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용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용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적격자 선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용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용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금리, 용자조건, 용자절차 등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용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용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4장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

제21조(포상금 지급 기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를 적용한다.

제22조(신고자 비밀보장) 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제정이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포괄적인 치료·관리체계 구축,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센터의 명칭 및 위치

나. 센터의 수행 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1) 노인정신건강증진과 기타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조기검진, 환자의 발견등록관리 업무

4) 보건복지인력 치매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다.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에 위탁 운영(안 제4조)

라. 구청장은 운영규정(조직, 인사, 재산·물품관리, 지도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안 제5조)

마. 수탁자는 시달 기준에 부합하여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보고(안 제6조)

바. 센터를 위탁·협약한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 경비 지원(안 제8조)

사. 협약 운영자의 사업운영에 대한 보고(안 제11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노인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4. 치매환자의 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5.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9.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리 전문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장비, 비품 및 자료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제11조(보고) ① 수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세부보고 사항은 협약 체결 시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의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중랑구 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이사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이사장 및 이사감사는 경영 성과, 직무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게 하여 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의 공정성 제고 및 책임 경영 정착 도모

나. 주요골자

- (1)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2명 이상에서 2명 이하로 개정(안 제7조)
- (2) 공단의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개정(안 제8조)
- (3) 기존 구청에서 하였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설공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수는 구청 2명, 구의회 3명, 이사회 2명(기존 구청 2명, 구의회 2명, 이사회 3명)으로 개정(안 제15조)

- (4) 임원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공단업무를 지도 감독 및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는 삭제(안 제16조)
- (5)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인터넷·일간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는 등 공고방법 및 기간 등 신설(안 제17조)
- (6)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서 법 개정에 따른 제82조 제3항(과태료 처분자의 이의제기), 제4항(이의제기에 대한 행정관청의 조치방법), 제5항(과태료 미납시 징수방법)은 삭제하고 영 제79조만 적용(안 제33조)

Ⅱ. 본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홍보과에 비치함(☎490-3316)

2009년 10월 19일

중 랑 구 청 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 등으로 구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원칙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안 제7조)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원칙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안 제7조)
-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등 임명 또는 위촉 규정을 신설(안 제10조, 제11조)
- 4) 수탁기관 선정의 공명하고 투명한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척 및 회피 규정 신설(안 제13조)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함(☎490-3356)

2009년 10월 19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중랑구에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거주 외국인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겪는 지역사회 부적응을 해소하여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안 제5조)

- 1) 중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가) 거주외국인

나) 결혼이민자

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나) 지원사업(안 제6조)

- 1) 거주외국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나)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다)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라)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마)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 1) 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업무위탁(안 제11조, 제12조)

- 1)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마) 외국인에 대한 표창(안 제16조)

-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가) 중랑구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 나)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바) 명예구민(안 제17조)

- 1)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II. 본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함.(☎490-3313)

2009년 10월 19일

중랑구청장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6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1. 제정이유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랑구정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및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자를 명예구민으로 선정, 명예구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선정대상(안 제2조)

1) 명예구민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중랑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

나) 중랑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나. 대상자 추천(안 제3조)

1) 후보자는 구청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다. 대상자 선정(안 제4조)

1)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 증서를 수여하며 명예구민 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라. 예우 및 사후관리(안 제6조)

1)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가) 구민의 날 및 중랑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나)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의 위촉기회 부여

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초빙강사로 활용

라) 외국인의 경우 중랑구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II. 본 안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비치함.(☎490-3313)

2009년 10월 19일

중 랑 구 청 장